

2026년 제1회 여수우체국 공무원 우정실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2026년 제1회 여수우체국 시행 공무원 우정실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여수우체국장

1. 최종 합격자 명단 : 1명

채용분야	응시번호	근무지	비고
공무원 우정실무원	여수 001	여수남면우체국 안도출장소	

2. 계약체결 관련 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6. 15. (월) 09:00 까지

나. 제출처 : 여수우체국 지원과

다. 제출서류

- 공무원 우정실무원 채용 계약신청서 1부
- 이력서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및 병역사항 포함)
- 운전면허증 사본 1통
- 증명사진 1매
- 우체국 통장 사본 1부

- ⑦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⑧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⑨ 채용신체검사서 1통(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
- ⑩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가입보험금 2,000만원)
- ⑪ 서약서 1통
- ⑫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통
- ⑬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등
(각 증명은 해당자에 한함)
- ⑭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1통

※ 위 제출서류 중 이중 실선으로 표시된 서류는 채용관서에서 제공

표준이력서 양식

(앞장)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경력()	지원분야		접수번호
성명	(한글)			
현주소	(주민등록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2. 교육사항				
직무관련 직업교육	교육 과정명	주요내용	기관명	교육기간
3. 근무 경력사항 (지원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항 기입)				
근무기간	구체적 업종	직위/역할	담당업무	비고
4. 운전 및 정보화 관련 자격사항 (채용 자격요건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				
자격분류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5. 정보화 등 자격사항 (채용 우대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				
자격분류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 자격분류 : 국가공인자격일 경우 '국가공인', 민간공인 자격일 경우 '민간공인'으로 기재				

서 약 서

(제100조제1항, 제117조 관련, 우체국소포원 및 우정실무원용)

본인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여수우체국 우정실무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체결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를시 채용을 취소함에 동의한다.
2.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4. 출·퇴근시간 및 근무기관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5. 우리 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 및 우편물에 관한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만약 위의 사항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인)

여수우체국장 귀하

[붙임 5]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본인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를 직접 조회·열람하였으며, 조회 결과 채용공고 혹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자격요건) 2항에 위배되는 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채용 및 근로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

※ (범죄경력 자료 조회·열람 방법) 본인에 한하여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휴대폰 인증 후 확인 가능

※※ (관리규정 제23조(자격요건)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에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